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9. 2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8일

나. 발 의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9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9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문화국 신설(안 제3조)
-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(안 제4조의3, 제8조, 제11조)
 - 1) 체육시설 확충,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: 체육진흥과
 - 2)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: 장애인복지과
 - 3) 도시 정비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: 재건축사업과
-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
 - 1) 문화체육과 → 문화예술과(안 제4조의3)
 - 2) 어르신·장애인과 → 어르신복지과(안 제8조)
 - 3) 주거사업과 → 재개발사업과(안 제11조)

○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(안 제4조의3, 제5조, 제8조, 제11조)

- 1) 미래교육과: 행정국 → 교육문화국
- 2) 문화체육과: 행정국 → 교육문화국
- 3) 보육지원과: 복지국 → 교육문화국
- 4) 교류협력팀: 총무과 → 문화예술과
- 5) 주택사업팀: 주택과 → 재건축사업과
- 6) 동행돌봄팀: 복지정책과 → 어르신복지과
- 7) 다문화팀 : 아동청소년과 → 복지정책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7국 1담당관 33과 158팀에서 1국, 3과, 2팀이 증가하였으며, 주요 변화는 “교육문화국”과 “체육진흥과”, “장애인복지과”, “재건축사업과”를 신설하며,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국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제출됨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3조~제4조는 신설되는 국을 교육문화국으로 하며, 그 하부에 미래교육과, 보육지원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
- 안 제4조의3, 제8조, 제11조에서는 체육진흥과, 장애인복지과, 재건축사업과가 신설되며,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, 어르신·장애인과가 어르신복지과로 주거사업과가 재개발사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을 담음.
- 안 제4조의3, 제5조, 제8조, 제11조에서는 부서 업무의 국 이동, 팀 업무의 과 이동, 소관 분장사무의 이동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7국 1담당관 33과 158팀에서 1국, 3과, 2팀이 증가하였으며, 주요 변화는 “교육문화국”과 “체육진흥과”, “장애인복지과”, “재건축사업과”를 신설하며,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국별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.
- 행정기구 개편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은 작년 3월 개정되어 기존의 실·국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였으며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에 따르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의 5차 조직개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처럼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)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,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및 주민편의,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9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9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문화국 신설(안 제3조)

나.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
(안 제4조의3, 제8조, 제11조)

- 1) 체육시설 확충,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: 체육진흥과
- 2)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: 장애인복지과
- 3) 도시 정비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: 재건축사업과

다.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

- 1) 문화체육과 → 문화예술과(안 제4조의3)
- 2) 어르신·장애인과 → 어르신복지과(안 제8조)
- 3) 주거사업과 → 재개발사업과(안 제11조)

라.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

(안 제4조의3, 제5조, 제8조, 제11조)

- 1) 미래교육과: 행정국 → 교육문화국
- 2) 문화체육과: 행정국 → 교육문화국
- 3) 보육지원과: 복지국 → 교육문화국
- 4) 교류협력팀: 총무과 → 문화예술과
- 5) 주택사업팀: 주택과 → 재건축사업과
- 6) 동행돌봄팀: 복지정책과 → 어르신복지과
- 7) 다문화팀 : 아동청소년과 → 복지정책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5. 8. 14. ~ 9. 3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미래도시국”을 “미래도시국, 교육문화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교육문화국) ① 교육문화국에 미래교육과, 보육지원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를 둔다.

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육정책, 학교지원, 도서관 운영, 과학육성, 평생교육,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보육정책, 공공보육, 민간보육, 출생지원에 관한 사항
3. 국가유산 및 문화·예술, 관광진흥, 의료특구,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
4. 체육진흥, 생활체육,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자치행정과, 미래교육과, 문화체육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후생복지, 대외교류”를 “후생복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보육지원과, 아동청소년과, 어르신·장애인과”를 “아동청소년과, 어르신복지과, 장애인복지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”을 “보훈, 외국인, 다문화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외국인, 다문화”를 “가족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장애인

복지”를 “통합돌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장애인복지, 장애인 시설,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1항 중 “주거사업과”를 “재개발사업과, 재건축사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재개발·재건축사업, 가로주택, 소규모재건축, 소규모재개발, 도시”를 “재개발 사업, 재정비촉진사업, 소규모주택정비, 공공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동주택 관리, 주택임대사업 관리, 신발생 및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

4. 재건축 사업, 지역주택조합, 도시재생사업, 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의 “행정국장”을 “교육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교육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교육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제7조제5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교육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아동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보육지원과장”을 “아동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보육지원과장”을 “아동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보육지원과장”을 “아동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어르신·장애인과장”을 “어르신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어르신·장애인과장”을 “어르신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미래도시국</u>, 행정국, 기획재정국, 복지국, 생활환경국, 안전교통국, 도시공간국을 둔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<u>미래도시국</u>, <u>교육문화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의3(교육문화국) ① <u>교육문화국에 미래교육과, 보육지원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육정책, 학교지원, 도서관 운영, 과학육성, 평생교육,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</u> 2. <u>보육정책, 공공보육, 민간보육, 출생지원에 관한 사항</u> 3. <u>국가유산 및 문화·예술, 관광진흥, 의료특구,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</u> 4. <u>체육진흥, 생활체육,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</u>
<p>제5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총무과, 홍보미디어과, <u>자치행정과</u>, <u>미래교육과</u>, <u>문화체육과</u>, 민원여권과를 둔다.</p> <p>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</p>	<p>제5조(행정국) ① ----- ----- <u>자치행정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/p>

장한다.

1. 청사관리, 인사,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, 대외교류, 구정의 정보화,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

2.·3. (생략)

4. 교육정책, 학교지원, 도서관 운영, 과학육성, 평생교육,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국가유산 및 문화·예술, 생활체육, 체육시설, 관광진흥,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
제8조(복지국)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생활보장과, 보육지원과, 아동청소년과, 어르신·장애인과를 둔다.

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복지서비스 지원·개발·연계·관리,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3. 보육, 여성정책,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

4. 아동복지, 청소년복지, 드림스타트, 외국인, 다문화에 관한 사항

-----.

1. -----

---- 후생복지-----

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6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복지국) ① -----

----- 아동청소년과, 어르신복지과, 장애인복지과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 보훈, 외국인, 다문화----

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 -----

----- 가족지원-----

5. 어르신 복지시설, 고령화 대책,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
<신 설>

제11조(도시공간국) ① 도시공간국에 주택과, 도시계획과, 주거사업과, 건축과, 부동산정보과를 둔다.

② 도시공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동주택관리, 주택사업, 시장재건축정비사업, 도시재생사업, 주거환경개선(관리형), 무허가건축,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3. 재개발·재건축사업, 가로주택, 소규모재건축, 소규모재개발,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4. 5. (생략)

5. -----
-- 통합돌봄-----

6. 장애인 복지, 장애인 시설,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(도시공간국) ① -----
----- 재개발사업과, 재건축사업과-----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공동주택 관리, 주택임대사업 관리, 신발생 및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

2. (현행과 같음)

3. 재개발 사업, 재정비촉진사업, 소규모 주택정비, 공공-----

4. 재건축 사업, 지역주택조합, 도시재생사업, 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

5.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